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 3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12나3311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을  
  담당변호사 이지연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0가소506423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9.  
판 결 선 고                    2013. 8. 23.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3.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C를 운영하는 피고가 2007. 12.과 2008. 1. 원고로부터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 콘텐츠 CD 총 3장을 구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내용증명), 갑 제5호증(계약서 및 약관), 갑 제6호증(계약서), 갑 제7호증(추가저작권 침해자료), 갑 제8호증(저작권 침해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구입한 CD에 첨부된 계약서에는, 콘텐츠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고 구매자는 사용권만을 가지는데, 그 사용허락의 범위는 구매자 본인만이 1회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구매자는 원고의 콘텐츠를 변형·재가공할 수는 있으나 그 변형·재가공된 이미지를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반드시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쇼핑몰 이용약관 역시 위와 같이 구매자의 사용범위를 제한하면서 콘텐츠에 관한 그 어떠한 지적재산권도 구매자에게 양도되지 않는다고 명

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C들에게 원고의 콘텐츠(디자인 시안, 팝업 콘텐츠, 오픈마켓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전시하여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의 전시제휴 계약 체결을 통하여 부여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매한 위 CD의 이미지 콘텐츠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디자인 시안을 만든 후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전시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데 이용한 사실, 피고는 전시된 디자인 시안을 보고 제작을 의뢰해온 고객들에게 원고의 이미지 콘텐츠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해주었는데, 그 중 일부 콘텐츠는 중복하여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전시권 역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제10조, 제19조)과 위 계약서 및 약관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허락된 '사용'이라 함은 원고의 콘텐츠를 홈페이지 제작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콘텐츠를 전시하거나 고객 유인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미지 콘텐츠를 그 사용허락 범위를 넘어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어서(피고는 자신이 제작한 디자인 시안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시한 것은 그 자신의 정당한 저작권 행사라 다투나, 가사 위 시안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사용허락 범위를 넘는 이용은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이 20,000,000원(=디자인 시안 300개의 25개월간 전시 사용료 8,750,000원 + 이미지 50개의 중복·불법 사용에 따른 손해액 11,75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미지 콘텐츠 중복 사용료 상당액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산정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시 사용료의 경우 단순한 이미지 콘텐츠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하는 디자인 시안의 사용료만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이미지 콘텐츠의 전시·영업 허락을 받기 위하여 통상 지급하였어야 할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하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전시한 원고의 이미지 콘텐츠 개수는 95개이고, 중복 사용한 개수는 4개인 사실, 원고가 자신이 제작한 디자인 시안 100개의 전시·영업을 허락해주고 통상 받는 사용료는 연 2,200,000원인 사실, 원고의 이미지 콘텐츠 1개당 1회 사용료는 2~3만 원인 사실, 원고의 이미지 콘텐츠 CD를 구입한 구매자들은 동일 이미지를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 횟수만큼 CD를 재구매하기도 하는 사실, 피고가 구매한 CD 3장의 가격은 1,155,000원인 사실, 피고는 2008. 5.경 원고로부터 저작권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기 전부터 최소한 2009. 4.까지는 원고의 이미지 콘텐츠를 전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은 이를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종두
	판사	김현정
	판사	제갈창